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472

발의연월일: 2021. 4. 14.

발 의 자 : 이수진(비) · 강민정 · 강병원

강은미・김수흥・김승남

송옥주 · 안호영 · 오영환

윤미향 · 이규민 의원

(11일)

제안이유

현행법은 2005년 건설폐기물법 시행 이후 지난 15년 동안 건설폐기물 처리량 및 처리업체 매출 규모 등은 약 2배 증가하는 등 처리업체 규모가 크게 성장했지만,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이하 "대체과징금"이라 함)을 1억원 이하로 유지하여 오고 있어 상대적으로 대체과징금의 제재 효과가 낮아진 상황임.

또한 대체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는 것 외에는 제재 수단이 없고, 대체과징금제도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제한 없이 반복해서 대체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건설폐기물의 부적정한 처리 및 반복적인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체과징금의 부과액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대체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 본래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대체과징금 처분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 대체과징금 적용을 제한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 록 하는 등의 법률 개정으로 부적정한 건설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영업정지 및 대체과징금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 실효 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기준을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하되, 해당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26조제1항).
- 나.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본래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3항).
- 다.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 니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함(안 제26조제5항).

법률 제 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제12호는 제외한다)의"를 "각 호(제12호 및 제16호는 제외한다)의"로, "1억원 이하의"를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 위에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건설폐기물의 적체(積滯) 등으로 건설폐기물 위탁처리자"를 "해당 영업정지로 인하여 그 영업의 이용자가 건설폐기 물을 위탁처리하지 못하여 건설폐기물이 사업장 안에 적체(積滯)됨으 로써 이용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건설폐기물로"를 "건설폐기 물이나 그 영업의 이용자가 보관 중인 건설폐기물의 적체에 따른 환 경오염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 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25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 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제25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영 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26조(과징금의 부과·징수 등) 제26조(과징금의 부과·징수 등) ① 시・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제25조제2항 각 호 (제12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 (제12호 및 제16호는 제외한다) 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의-----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영업정 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 그 영 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 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 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단서 신설>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만, 그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매출액 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억원을 초과 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 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건설폐기물의 적체(積滯) 등

 으로 건설폐기물 위탁처리자

 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

 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1. 해당 영업정지로 인하여 그 영업의 이용자가 건설폐기물을 위탁처리하지 못하여 건설폐기물이 사업장 안에 적

2. 해당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생략)

- ② (생략)
-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④ (생 략) <신 설>

체(積滯)됨으로써 이용자
2
건설폐기물이
나 그 영업의 이용자가 보관
중인 건설폐기물의 적체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
고 제25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
지 처분을 하거나 「지방행정
제재 ·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
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

과되기 전에 제25조제2항에 따

른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경우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